제86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 (문화재청)	1.설계승인 시 설계도서 보완요청 등(신설) ㅇ 문화재청장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 보완 및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도서 보완 및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하며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」제18조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「설계도서 보안이행계획서」를 제출하고, 문화재청장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처리기한을 통보 - 단, 30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설계도서 「보완이행계획서」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. ▶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	1.비중요
2	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 및 이와 통신하는 기기의 조건(신설) ㅇ 현재까지 UWB 기술 이용이 불가하던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서 UWB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건을 마련 - 이용가능 대역: 6~8.8㎓ / 요구 기능: 항공기·선박에서 전파를 자동차단하는 기능 ▶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7) 개정안 (소방청)	1.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7) (신설) ㅇ 호스릴방식 할론소화설비를 차고 또는 주차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 ▶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7) 제10조	1.비중요
4	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8) 개정안 (소방청)	1.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8) (강화) ㅇ 수동방식인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 '개방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'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 ▶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8) 제11조	1.비중요
5	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(강화) ㅇ 자율주행경로 오차를 70mm 이하로 설정 ㅇ 위급상황 및 제어불가 상태 시 대처할 수 있는 기능 및 요구사항 (ISO 표준 수준) 기술 ▶농업기계 검정기준 제4조 2.관리기, 경운기 비상스위치 설치기준(강화) ㅇ 로터리 작업을 표준으로 하는 보행형 관리기, 경운기에 위급상황 시 기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적색의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의무화 ▶농업기계 검정기준 제4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미니기차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(신설)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대상인 '미니기차' 에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(단, 지붕형 미니기차의 경우 안전벨트 또는 안전문 설치)(안 별표3 Ⅱ. 공통기준 1. 기본 요구사항 15) 신설) ▶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 별표3	1.비중요
7	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대중형골프장 입장요금 산정기준(신설) ㅇ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을 수도권 지역 회원제골프장의 성수기(5월, 10월) 입장요금 평균(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 반영)으로 규정(안 제5조) ㅇ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34,000원으로 규정(안 제6조) ▶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, 제6조	1.비중요
8	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골프업자(표시의무자)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(신설) ㅇ 골프장업을 등록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이용요금에 대해 규정(안 제3조) –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 입장요금, 카트 이용요금,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대상으로 하고,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ㅇ 이용요금의 표시방법을 규정(안 제4조) – 매월 시작일에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 게재,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골프장 내에도 게재 ▶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3조, 제4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산림청)	1.목재 수입신고 대상품목 확대(강화) ㅇ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시 신고해야하는 대상품목을 9개로 확대 및 재정리(별표1의4 신설) ※ (현행) ①원목, ②제재목, ③방부목재, ④난연목재, ⑤집성재, ⑥합판, ⑦목재펠릿 → (개정) ①원목, ②제재목(방부목재, 난연목재, 집성재 포함), ③합판, ④목재펠릿, ⑤단판, ⑥성형목재, ⑦파티클보드, ⑧섬유판, ⑨목재펄프 ▶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	1.비중요
10	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캐스케이드 보일러 세부검사기준 마련(신설) ㅇ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 기준 마련 - 제22장 캐스케이드 보일러 설치·시공기준 신설 - 제23장 캐스케이드 보일러 설치검사기준 신설 - 제24장 캐스케이드 보일러 계속사용검사기준 신설 - 제26장 캐스케이드 보일러 개조검사기준 신설 - 제27장 캐스케이드 보일러 설치장소 변경검사기준 신설 ▶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제22.8, 제23.4, 제24.4, 제26.4, 제27.4	1.비중요
11	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전계강도 등의 허용치(신설) ㅇ 79~90㎑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 기준값을 신설 ▶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2	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및 절차(강화) ㅇ 소형화물차 충돌시험,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, 승용차 및 3.5톤 이하 화물·특수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시험, 등화장치, 좌석안전띠, 창유리 등에 대한 세부시험기준, 시험방법 등 시험절차 마련 및 국제기준 조화 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3조(별표1), 제3조(별표6)	1.비중요
13	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정밀안전진단계획서 제출 의무 추가(강화) ㅇ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인과 협의하여 확정한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▶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4 2.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의 대상 신설(신설) ㅇ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기준설정 ▶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9 3.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신설(신설) ㅇ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(업무제한) 명령을 시행 ▶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20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4	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등(신설) ㅇ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(상해 12~14등급)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 시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도록 개선 ▶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, 제12조	1.비중요
15	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등(신설) ㅇ 경상환자(상해 12~14등급)의 경우 지급보증서에 지급보증기간 명시하도록 개선 ▶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	1.비중요
16	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(해동 관련 표시의무)(강화) ㅇ 해동육 판매시 해동에 대한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고 해동된 제품임과 조리용 외 사용하거나 재냉동 금지 표시와 제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▶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2.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(강화) ㅇ 대장균 검출기준 위반 및 허용된 첨가물 이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등을 회수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▶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3.행정처분 기준(강화) ㅇ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개별 행정처분 기준 강화 ▶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